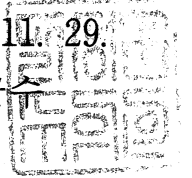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5
----------	------

제출일자 : 2019. 11. 29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나. 그 외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조례 협업과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및 해임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 단장은 읍·면 및 단체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단원이 호선
 - 단장 해임 사유 신설
- 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지원범위(기준) 명시(안 제10조제8항, 9항)
-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재해보상의 종류, 지급 방법, 절차 등 명시

3. 조례안 : 붙임

3. 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불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부서합의 : 2019. 10.(자치행정과)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입법예고입법 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0. 18. ~ 11. 7.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군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방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방재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제4조제4항에 따른 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4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위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달성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위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⑨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정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과 읍·면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단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제1항이 규정한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가 같은 유족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모든 유족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유족 아닌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에게 그 선정자 위임인의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 급별 장 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을 준 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사 진 (3×4cm)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 5.5cm →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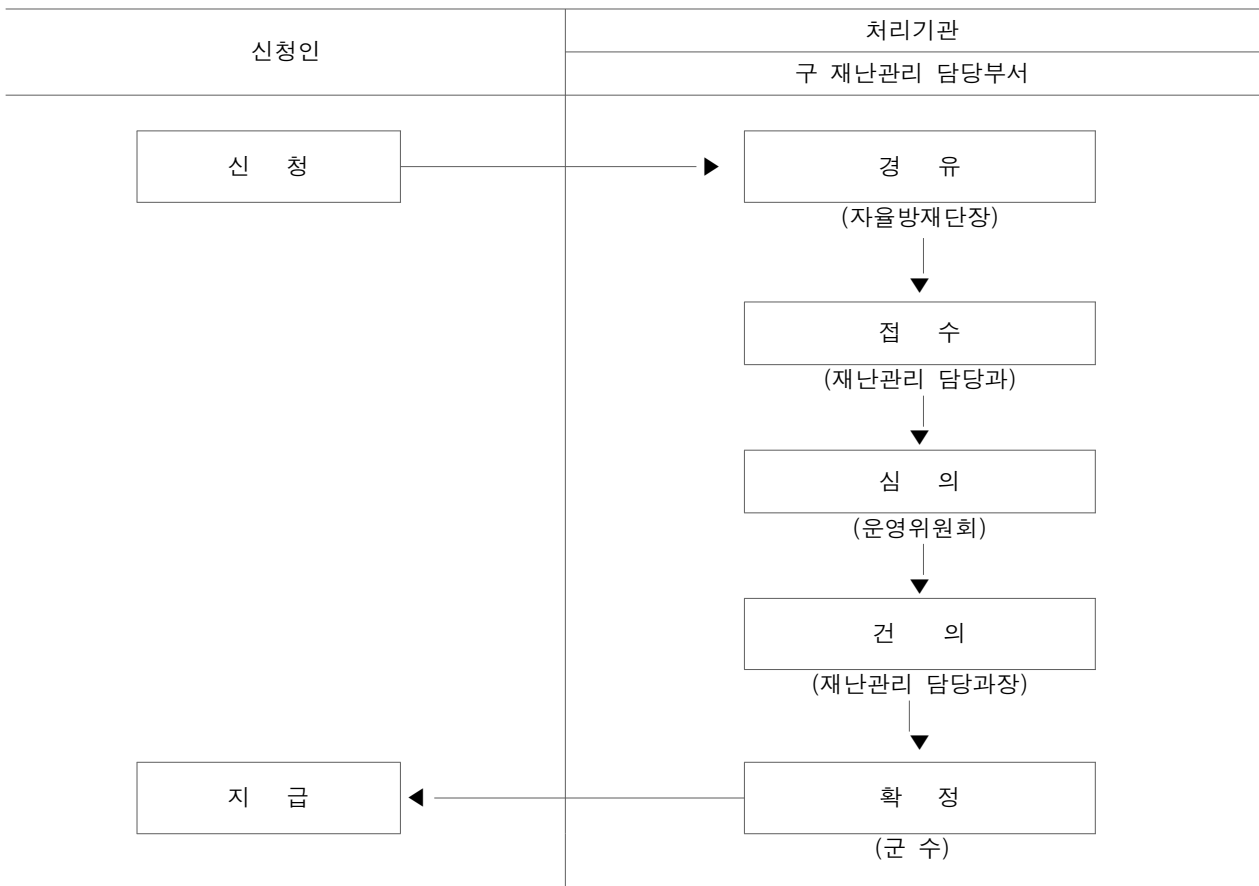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